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제정 2007. 3. 7 규정 제 11호
개정 2009. 3. 5 규정 제 39호
일부개정 2013. 1. 31 규정 제 97호
일부개정 2014. 10. 31 규정 제1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정서함양은 물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규정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직원의 복지향상에 관하여는 정관 및 보수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공단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시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 내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복리후생

제6조(후생기구 및 시설)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직장새마을금고와 구내식당 및 휴게소 등 후생복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삭제 <2013. 1. 31>
4. 명절휴가비
5. 삭제 <2013. 1. 31>
6. 삭제 <2009. 3. 5>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제8조(피복지급) 공단은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학자금 지급) 공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 임·직원의 자녀중 중학교·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재해보상

제10조(재해보상)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11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

여야 한다.

② 공단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2조(보상의 경감)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공단이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31]

제5장 체육

제13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체육행사 등) ① 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취미클럽을 육성 발전시킴에 적극 지원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39호, 2009. 3.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부칙 <규정 제97호, 2013. 1.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21호, 2014. 10. 31>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